

한국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 :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정주신 충남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피하는 역할로서 동시성을 보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주제어 : 군부정권, 대중음악, 금지, 억압,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 이 글은 2019년 12월 26일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한국정치사회연구소와 한국국회학회와의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

I. 서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정치사에서 구군부세력 박정희 정권의 18년 세도 집권과 그 후에 신군부세력 전두환 정권 8년 세도 집권까지 26년 동안 군부정권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금압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시기의 군부정치와 대중음악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1961년 5·16쿠데타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1972년 유신체제 시기를 지나 1979년 부마항쟁과 10·26사건 및 신군부세력에 의한 연속적인 5·17쿠데타와 12·12쿠데타의 격동기를 보내왔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17쿠데타로 박정희 정권 계승과정에서 5·18항쟁의 양민을 학살하면서 박정희 군부정권을 계승하였다. 이처럼 군부정권은 불법과 비민주적 방식으로 체제유지를 강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기둥인 대중음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론적으로 군부정권은 대중음악의 유풃리를 따져 이로우면 취하고 이롭지 않으면 버리는 양날 같은 정책과 제도화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금압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대중음악 금압 정책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 시대를 초월하는 엔터테인먼트로 끼·흥·정을 중심으로 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을 금압시키려 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하고자 하고자 한다.

5·16 구군부세력과 5·17 신군부세력이 쿠데타 이후 내세운 군의 정치개입 공약 및 활동목표를 사회문화정책과 비교해보면, 논제에 더 부합한 대중음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표면상으로 5·16의 ‘군사혁명위원회’(군정)는 6항목의 공약을 발표, 즉 ①반공정책의 고수, ②유엔현장의 준수, ③부패 일소, ④자립경제 수립, ⑤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⑥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 이양과 군 본연의 임무 복귀.”(정주신 2011, 74) 등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시켰다. 이에 마찬가지로 신군부세력 ‘국가보위비상대

책임위원회'(군정)의 활동목표는 ①원론상 안보체제의 강화, ②경제난국의 타개, ③정치발전의 충실, 그리고 ④사회악 일소에 대한 국가규율의 확립 등(정주신 2011, 74)에 두고 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시켰다. 두 세력은 쿠데타 시기로 볼 때 20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들이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내세운 목적이 반공과 안보 및 사회악 일소로 대동소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문화정책, 특히 대중음악은 큰 범주로서 군정 공약에는 없지만 부패 일소나 사회악 일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군부의 정치개입과정에서 초래된 폭력성이 대중음악을 탄압하는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5·16세력에 의한 사회정화 차원의 깡패소탕 작전과 신군부세력의 삼청교육대 입소 사건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5·16세력은 구악일소를 명분으로 특수범죄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미풍양속 위반행위·풍기문란사범·폭력배 등 1만 3천 명을 체포했다. 신군부의 국보위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로서 폭력배·사기·공갈·마약사범 등 5만 7천여 명을 검거했다. 5·16직후 깡패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를 누볐고 5·17직후 폭력배들은 군부대로 넘겨져 삼청교육을 받았다(삼청교육 등 제5공화국 사회학 일소와 폭력성에 대해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 40-44). 이처럼 군부세력이 집권 과정에서 폭력성을 배태시킨 것은 이후 그들이 한국정치를 주도하면서 파행과 악법을 양산하는 토대가 되었다. 예컨대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악법을 양산하여 반체제적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이는 또한 폭력과 탄압을 위해 경찰력, 군부동원, 그리고 정보부 및 보안사 등에서의 정치인에 대한 사찰과 구속·감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대대적인 언론정비 내지는 통폐합을 가져와 기자 및 언론사의 친여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대중가요는 끼(talent)·흥(fun)·정(attachment)과 눈물과 웃음으로 시대를 비추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노래에 대한 탄압과 금지는 일개 정권에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군부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문화민주주의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음악에 대한 금지는 폭력성과 관계없고 효용성도 없을 것이다. 노래에 대한 정치권력의 금지정책은 대중음악을 통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감성적 자유를 말살하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금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중음악 금지곡이란 용어는 그 의미와 범위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거나, 음악통제나 음반검열 및 금지앨범 등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개 금지곡이란 용어는, 노래가 대중매체나 공연시장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본격화한 개념이며, 특히 대중가요에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최근에 영국의 록그룹 '퀸'(Queen) 노래나 '비틀즈'(The Beatles) 노래라는 외국곡도 자유롭게 떼창(singalong)으로 부르고 있는데(정주신 2019a; 정주신 2019b), 지난날 한국에서 내 마음대로 노래 한번 크게 부르지 못했던 시대는 역사교과서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문화정책에서부터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를 거쳐 2013년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이르기까지, 금지곡의 역사는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어떤 노래는 불러도 '무해'하고, 어떤 노래는 방송에 나오기에 '부적격'하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노래는 곧 해당 군부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적합해야만 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따라서 누군가의 제재나 폭압에 의한 사전심의나 사후심의 없이 자유로이 표현하고 공연하고 불러야 할, 대중음악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금지사를 군부정권에 국한해서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중가요는 수많은 사람의 애환이 담긴 노래가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월과 함께 변해온 것이다. 1987년 민주화로 대부분의 금지곡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졌으나, 1996년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상태에서도 아직도 음반 사전심의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유산이라면, 군부정권에서 퇴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나 검열과 사후심의나 검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과 흥과 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역사가 격변과 가난함

의 역사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대중음악을 군부정권 차원에서 메스를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차단하고 문화와 대중음악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소위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군부정권 태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62년 방송윤리위원회와 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등의 설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6월 항쟁의 민주화로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는 점차 약화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청소년유해물 지정, 방송부적격 가요, 뮤직비디오 등급심의와 같은 규제는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권정구 2016, 77).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금지사 일 고찰을 군부정권의 폭력성에 기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26년 동안 군부정권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금압 정책을 펼친 결과로서, 군부정치와 대중음악에 대한 융합적 고찰을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그 연구범위는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1979년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 물러나고 또 5·18항쟁을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1987년 6월항쟁으로 물러나기까지 근 26년의 기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범위를 전후한 시대적 배경도 언급이 불가피하리라 생각된다. 이 당시에 시작된 대중음악 검열과 금압조치는 오늘날까지도 잔재가 남아 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K-POP'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과 맥을 잇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한국 대중음악의 금지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그동안 학술지를 통해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첫째, 대중음악의 왜색과 표절관계 및 대중음악 규제에 대한 저항의 변화 양상에 관한 것이다. “대중음악 금지곡 중 왜색과 표절의 관계 고찰: 비공개 심의원본자료를 중심으로.”(권정구 2018, 61-62)의 경우, 금지곡 해제가 있었던 1965년부

터 1987년까지 일본곡 표절과 왜색의 판정을 정리하고 기준을 밝히는 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기 다수의 금지곡 연구 한계는 연도 별로 통계로 제시 혹은 노랫말을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주로 2차 자료인 관보와 통계연감 같은 참고 자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대중음악 규제와 저항의 역학, 그리고 그 반전.” (권정구 2016, 78)의 경우,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대중음악 규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실들을 정리하고, 금지곡과 관련한 심의원본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둘째,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을 분석하는 경향이 정치경제 영역에 치중해 있고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영역을 부수적으로 간주해 온 데 대한 문제 제기이다.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음악정책을 중심으로.”(김은경 2010, 3-7)의 경우, 음악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음악정책 속에서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을 분석하는 경향을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 즉 ①경제성장을 이룬 개발정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정권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인 정치경제적 패러다임과 박정희 지배체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음악과 같은 문화영역을 부수적으로 간주하고 정치와 경제영역에 국한시키고 있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자는 것, ②음악정책에서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을 분석하는 시도는 구조와 행의 복합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③박정희 정권 시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융합되는 음악정책이 유신 전후의 단절과 연속성에서 복합적인 요인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 ④박정희체제의 장기집권을 음악 속에 내재된 지배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이 지배체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지지와 항의 양상을 살피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유신체제의 음악 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김은경 2011, 67-68)은 금지곡 지정을 표현물이 발표되기 이전인 사전검열과 표현물이 발표 이후인 사후검열에 따른 결과로 긴급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신체제시기 대중음악통제인 검열 메커니즘에 의해서 금지곡이 양산되었음을 고찰했다. 이는

사전(事前)과 사후(事後) 검열을 하는 주체와 검열의 대상인 객체 문제 일 수도 있고, 검열의 방식(方式)과 정도(程度)에 따른 차별일 수도 있다. 이들 연구는 아직까지 중대하게 학술연구로 다루어지지 않아 후속 연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해방 이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 권위주의정권하의 대중음악 통제에 관한 것이다.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문옥배 2008, 25-64)는 일제시기의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해방 이후, 특히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의 금지곡을 실증적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금지곡의 규모와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주도의 규제 시기와 사전심의제 폐지, 정부의 제도적 음악검열 조직, 음악의 검열과 통제의 변천과정, 그리고 1996년 헌법재판소의 음반가요의 사전심의 위헌판결 등을 살폈다. 또 다른 글인 “음악의 정치윤리적 독해: 한국 권위주의정권하의 대중가요 통제를 중심으로.”(양삼석 2010, 223)는 한국의 권위주의정권(군사정권)하에 행하여진 음악의 통제가 갖는 윤리성, 즉 1975년 ‘공연활동 정화대책’(3차에 걸친 금지처분 222곡)과 1983년 ‘공연윤리위원회’(정치·사회·윤리적 측면의 금지 사유 382곡)등 윤리적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연구방법으로 정치학과 음악학의 상호연관성, 사회학·사회심리학·역사학 등 학제적 접근과 학문적 융합연구의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음악의 정치적 이용을 서양과 동양,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음악장르, 순수음악과 대중음악,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 치자측(治者側)와 피치자측(被治者側), 그리고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경우와 사회·윤리적인 경우 등 다각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양삼석 2010, 222). 또한 “한국 군사정권하의 금지곡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 1970~1980년대의 대중음악 통제를 중심으로.”(양삼석 2012, 3)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금지된 곡과 금지에서 제외된 곡들에 대해 작사가별 분석에 초점을 두면서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 정치행태와 경제적 공허 간의 논쟁 과정에서 도외시된 음악 분야와 정치경제적 해석에서 통치수단에 기능해 온 음악적 역할을 부각하였다. 아울러 “내가 체험한 1980, 90년대 음반검열과 음반법.”

(이영미 2011, 282-283)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저자가 겪은 음반법과 노래 검열 체험을 바탕으로 음반법을 통한 노래의 통제와 그 본질적 특성, 당시 겪은 사건, 법과 검열에 대한 저자의 의식과 느낌, 판단 등을 모두 이야기한 것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간의 기록과 상당량의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한 경험담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중음악의 왜색과 표절 관계 및 대중음악 금지와 규제에 대한 저항의 변화 양상이 경제영역을 중시하고 반면 대중음악과 같은 문화예술영역을 부수적으로 간주해 온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의 금지곡에 대한 음악검열과 음악의 정치적 이용 등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의 정치군인으로서의 역할과 그 이후 집권육의 근성을 보면 그들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자유나 헌정질서 유지라기보다는 그들 체제유지에 골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군부정권의 정치개입과 관련 기존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의 금지나 통제 조치를 군부정권의 이데올로기나 지배양식에 맞춰 연구하는 방법에만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군부정치와 대중음악과의 상호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군부정권 체제유지의 수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음악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만일 군부정권의 체제유지에 저항적이거나 조롱하는 경우 대중음악은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왔다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대중음악이 그동안 군부정권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비정치적 요인으로서 사회문화 분야였다면, 군부정권이 체제유지의 유불리에 따라 대중음악 성쇠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군부정권이 경제우선주의를 선택하면 비정치적이지만 군부의 생존과 동격일 때 상위전략이 되겠지만, 대중음악이나 문화 등은 비정치적 혹은 비민주적인 콘텐츠로 하위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군부정권이 경제우위의 전략과 비민주적인 전략으로 체제유지를 하고자 하다면, 대중음악이나 사회 및 문화 등은 하위전략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소위 군부정권에서 대중음악은

체제유지에 도움이 안 될 경우 여러가지 구실을 들이대며 ‘금지’나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연구는 기존 연구처럼, 표절과 왜색만의 관점에서도 아니고, 규제에 대한 저항의 변화 양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정권의 지배양식으로서의 통제적인 음악정책도 아닌, 군부정권의 구조보다는 행위자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학과 음악학의 상호연관성 혹은 융합연구를 학문과의 통섭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경우와 사회·윤리적인 경우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도 아닌, 금지곡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군부정권의 속성이 불법적인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했으므로 체제유지의 한계로 작용하다 보니 그들의 통치기간 동안 국민을 억압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군부가 집권욕과 억압성에 초점을 두면 대중음악 금지는 강화될 것이며, 그와 달리 자유화와 민주화로 치달을 때 대중음악 금지는 해금되거나 완화되는 측면을 보인다는 맥락을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함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등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예컨대 군부정권에서는 마땅히 대중음악이 체제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필요충분조건일 때는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대중음악 선택이 불가할 때 아예 유보나 금지되는 방식인 ‘배제’를 취했다. 이를테면 선택의 전략은 군부정권에 유익한 것을 취하는 방식이므로, 대중음악이 정권을 찬양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정권에 도움이 안 되거나 불필요할 때는 대중음악 자체가 금지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배제의 전략은 정권의 도덕성을 가려

국민의 눈높이와 달리 자의적으로 대중음악을 고립시켜 음악 및 공연을 못하게 막는 방식인 것이다.

Ⅲ.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변천

1. 박정희 정권

5·16쿠데타로 군정 기간을 거친 박정희 정권은 제3공화국을 공고화할 목적으로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 18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 18조2항에서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 영화나 연예 등에 대한 검열을 강조하여 헌법 18조1항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합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군부정권의 입맛에 맞게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심의와 검열을 위한 조치였으며, 대중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이 군부정권에 합당할 때 예술이지 그렇지 않으면 금압조치임에 틀림없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의 일환으로 제정된 유신헌법은 집권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초법적인 막강한 기능부여는 물론 반대자를 처벌하는 긴급조치를 양산하였다.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 정권은 ①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와 2호’(일체의 헌법개정 논의 금지 내용), ②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사건 이후), ③ 1975년 4월 ‘긴급조치 7호’(유신철폐운동에 대응한 고려대 휴교령 및 군대 투입), 그리고 ④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와 함께(문옥배 2008, 51), ⑤ 1975년 6월 ‘공연활동의 정화대책’(대중예술의 퇴폐성도 국가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지) 등을 발표하며 집권욕과 폭압성을 일관시켰다.

첫째,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방송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중음악에 대한 사전심사 혹은 사후심사를 통해 금지곡 낙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우선, 대중음악 통제조치의 발단은 1962년 6월 13일에 방송윤리위원회가 설립되고부터 시작하였다. 문화공보부는 공연윤리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방송윤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이는 실제 문화예술의 심의나 규제 및 검열을 위한 정권 수단의 들러리로 만들기에 불과했다. 예컨대 ①영화각본, ②가요 및 음반의 가사와 악보, ③무대공연물의 각본에 대한 사전심의, ④영화 검열심사, ⑤완제 음반의 사후심의, ⑥무대공연물공연 실태 및 음반유통 실태조사확인 등이 그것이다(문공부 1979, 577-578). 그다음, 방송윤리위원회의 설립은 ①방송윤리규정 엄수, ②자유와 품격에 의한 방송의 자율적 보장, ③공공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태동됐다. 그러나 1963년 1월에는 최초의 방송윤리규정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조항의 첨삭과 그 내용이 보강·확대되었고 저촉사항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졌다. 제재에는 방송사에 경고·해명·정정·취소·사과 등이 부과되었으며, 방송관계자에게는 견책·근신·출연정지·집필정지 등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1965년 9월 「음반에 관한 법률」과 1975년 6월 「음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의 골자는 음악의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국가(정부)가 수시로 개입하고 통제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금지곡 양산 및 음반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였다. 이 법의 행정요강에는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전에 제작된 모든 대중음악 레코드에 대한 억압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65년 제10조(사용등 금지) 다음 각호의 1, 즉 ①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②직접·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을 입히는 음반 등은 불특정다수인이 제작·배포·청취함을 금지하였다.

둘째, 박정희 정권의 대중음악 금지정책은 1962년 1월 5일에 창립된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로 시작해서 1963년 1월 30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단체로 변천해왔다. 게다가 1966년 1월 2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10개 단체와 한국영화제작자협의회

등 5개 단체 도합 15개 단체 대표자 발기인대회로 발족한 ‘예술문화윤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방침과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책을 만들었다(양삼석 2010, 224; 문옥배 2008, 27). 1966년부터 작사·작곡을 포함한 음악작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의 심의였으나, 1967년 3월 30일 「음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대중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활동이 시작됐다. 1967년 3월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68년부터 가요 부문에 대한 심의 실시는 이 법의 행정요강 제2조 제1항 법시행 이전에 제작된 모든 대중음악의 국내 및 복사판(외국 레코드)에 대해 사후심의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문옥배 2008, 28), 그 위원회 산하의 ‘가요심의회위원회’가 가요에 대한 검열과 금지를 본격화하였다(양삼석 2010, 224). 또한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형성과 더불어 연도별 가요 음반의 심의통계가 1970년도부터 수정과 반례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5년에 절정을 이뤘다. 이때는 1975년 당시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는 등 집권욕과 폭압성이 강화되어 불안한 시국의 반증을 보였다. 이 시기는 1971년 8월 실미도사건, 야당인 신민당의 총선에서 약진, 서울 8개 대학 휴업령과 무장군인 고려대 난입, 1972년 유신체제 등장, 1974년~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緊急措置)로 말미암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집권위기를 보여준 사회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문옥배 2008, 29).

셋째,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1975.5.13.~1979.12.8. 일)의 발동으로, 1975년의 대중음악 금지곡 지정은 가요계에 막강한 타격을 가했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의 발동이었으나, 그 내용의 근거와 금지 사유는 ①창법 저속, ②시의 부적합, ③불신풍조 조장, 냉소 등 대중음악을 금압하는 유치한 명목이었다. 이 긴급조치 제9호로 공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조치’는 군부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며, 그 반대급부로 문화와 예술의 전분야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탄압과 통제조치가 포함된 강력처벌을 의미했다. 긴급조치 제9호는 ①박정희 정권에 대한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금지, ②학생들의 불법 집회·시위·정치 간섭 행

위 금지, ③방송·보도·전파의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 금지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긴급조치 제9호 제8조항은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통제와 단속조항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대중음악 금지곡이 지정된 것은 1975년 6월, 이 무렵 유신악법과 더불어 대중음악 금지곡을 무더기로 양산해 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금지곡이라면 방송금지 조치에 그쳤으나 이제 한번 금지곡 판정을 받으면 방송금지하는 물론 그 곡이 담긴 음반 자체의 생산과 유통, 공연까지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6월의 ‘공연활동의 정화대책’도 대중음악 통제의 명분, 즉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폐기의 주장과 퇴폐성 등 정치와 음악에 대한 통제를 동일한 강력법으로 일치시켰다(양삼석 2010, 224; 문옥배 2008, 51-52). 특히 1975년 6월 6일 문화공보부는 「공연물 및 가요정화 대책」을 내세워 대중음악에 대해서 과거의 발매곡까지 소급하여 사후심의를 강행하였다. 군부정권은 모든 공연예술의 심의를 강화되는 한편, 당시 발표된 모든 대중가요에 대해 사후재심이라는 강력한 통제방침을 내세웠다. 즉, 군부정권이 내세우는 퇴폐적인 공연물, 즉 ①국가안전 수호와 공공질서 확립, ②국력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③사회질서 문란, ④사회기강과 윤리 등을 해치는 20개 항목을 철폐시켰다(“정화 바람에 날아갈 ‘퇴폐 공연물.’”(『동아일보』, 1975/06/07). 그 결과 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문화공보부에 보고한바, 총 222곡(1차 130곡, 2차 44곡, 3차 48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치로 유신시기 긴급조치 제9호가 횡행하면서 1975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4백40여 대중음악이 방송금지나 음반판매금지가 불가피했다(양삼석 2010, 224). 1975년 「음반법」 제10조(사용등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 즉, 음반의 내용규제를 강화해 불특정다수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①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②민족적 주체성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음반, ③사회기강과 윤리를 해하는 퇴폐적인 음반, ④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등은 제작·배포·판매할 수 없도록 금압조치를 확대·강화하였다. 유신체제하에서 대부분의 금지곡 지정(제1차 1975년 6월 19일, 제2차 1975년 7월 9일, 3차

1975년 9월 29일)은 대중음악 장르에 상관없이 노랫말이 불건전하고 퇴폐적이고 저속하다는 조치를 당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시기(1968년~1979년) 대중음악이 총 379곡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그 외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연법」 제6장 보칙의 제25조의 3항의 공연윤리위원회 설치, 1976년 5월 개정된 「공연법」(공포번호 2884)에 의해 예술문화윤리위원회 해체와 「한국공연윤리위원회」 발족으로 대중음악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확대 실시되었다(양삼석 2010, 225).

요컨대 공연윤리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 향상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풍토를 정립하는 데 있었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심의의 심의통과 기준으로 작사자 월북·왜색·불신감조장·품위없음·불건전·치졸·허무·비탄·애상·표절·창법저속·가사저속·가사퇴폐·저속·퇴폐·기타 등을 명시했다(양삼석 2010, 225). 그러나 각 분야 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와 공연물제작업자의 재산권, 그리고 윤리심에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심의 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2.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언론사 통폐합과 함께 방송법 폐지 대신에 언론기본법(제정 1980.12.31 제3347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의해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됐고, 방송심의위원회는 1987년 9월,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해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여 방송금지곡 449곡을 해제시켰다(문옥배 2008, 47). 아울러 1987년 6월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기본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다시 방송법이 제정(1987.11.28 법률 제3978호)되었다. 이로써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대신 독립적 권한이 부여되는 단일한 심의 결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동등하게 전두환 정권은 기존 박정희 정권하에서 제정된 여러 대중음악 금지조치를 지켜왔으나, 당시 규제일변도의 강압체

제는 국내외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자유화 조치로 전환하여 체제이완이 불가피했다. 그 후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집권 민주정의당 전당대회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었다. 결국 6월 항쟁과 더불어 대통령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간선제에 의한 집권 신군부세력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후임 노태우로의 평화적 정권이양이었지만, 전두환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면서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첫째, 1980년 신군부의 등장에 맞서 군부정권에 대한 반발로 저항가요가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방송윤리위원회’가 그 명칭을 변경, ‘방송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방송심의에 대한 제도규제도 강화되었다(양삼석 2010, 224). 그러나 1984년 전두환 정권의 자유화 조치 이후 과거 대중음악 활동이 금지되었던 대중음악인들의 복귀와 통행 금지 해제로 대중음악인들의 활동영역은 커졌다. 또한 1987년 6월항쟁과 신군부세력의 직선제 수용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금지곡이 해제되었다. 한편 1976년 형성부터 1997년 해체될 때까지 공연윤리위원회는 총 9기의 윤리위원을 두었고, 임기는 1994년까지는 3년, 그 이후는 2년으로 바뀌어 연임을 가능하도록 했다(문옥배 2008, 34). 그 위원들의 분포는 1988년까지 교수와 언론인이 대부분이었으나, 1988년 이후에는 민주화와 규제 완화의 추세 속에서 전문적인 공연예술가, 평론가와 같이 직접 전공과 관련된 공연예술 부문 인사들이 위촉되었다(문옥배 2008, 34).

둘째, 1980년 3월에는 영화광고 심의업무가 문공부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이관되어 광고물 심의요강이 제정되었고, 1980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10054호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정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그 모임에는 대개 윤리위원과 심의위원 중에서 참여하였다(문옥배 2008, 34). 정화추진위원회는 1980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10054호에 의거,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귀속되었다. 그 직무로는 ①사회정화 업무 연구 및 기획, ②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命)에 의해 사회정화 업무, ③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조정과 통제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9년 2월 국무회의의 의결로 폐지되었다(문옥배 2008, 34-35) 1981년 10월 문화공보부로부터 비디오심의를 위임받아 1982년 분과심의위원회가 공연물-가요음반-영화-비디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1983년 영화심의위원회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로 나뉘어 1985년까지 시행되었고, 1986년에는 심의 분과가 공연물-영화-가요 음반-비디오-광고물 등 5개 분과 위원회로 확대되었다(문옥배 2008, 35). 1986년부터는 윤리위원이 각 분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제도화되어 윤리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셋째,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추세에서 공연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대중음악 규제 완화라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되어 1988년 12월 회칙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1989년부터 실시하게 된다(문옥배 2008, 36). 개선된 회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내무부·국방부·안기부 등 관계 공무원의 심의위원 참여제도가 198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며, ②1989년 1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운영자문회의 발족, ③문화공보부의 승인제도였던 제반 규정(회칙은 제외)의 개정과 폐지, ④각 분야 심의위원 위촉시 문화공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해 오던 것을 공연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 ⑤소재의 개방 등, 표현의 자유를 전면 개방과 자율적 창작활동 도모, ⑥단, 공산주의 찬양 내용이나 극악무도한 잔학물, 전통윤리에 반하는 음란, 퇴폐내용은 계속 규제한다는 것 등이었다(문옥배 2008, 36-37).

넷째,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민주화 여망으로 문화공보부가 1987년 8월 7일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에 따라 신설한 공연윤리위원회는 가요 해금 조치로 일관했다. 즉 그동안 대중음악 금지로 묶여 있었던 국내 금지곡(총 382곡) 중, ①정책결정 대상인 월북작가의 작품(88곡)을 제외한 나머지(294곡)에 대한 재심에 착수, ②1987년 8월 18일 186곡을 해금시켰고, ③이후 학계의 논의들에 힘입어 1988년 10월 27일에 남북·월북 음악가(63명)의 작품도 규제에서 풀어줬다(양삼석 2010, 224; 문옥배 2008, 40). 1980년 공포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방송윤리위원회」에

서 그 명칭이 바뀐 「방송심의위원회」도 1987년 9월 5일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해제라는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방송금지곡(499곡)을 해제하고 방송금지곡(332곡)만을 남겼다(양삼석 2010, 224). 1987년 ‘6월항쟁’으로 불리는 6·10국민대회 이후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각계에 민주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문옥배 2008, 40).

다섯째, 대중가요 외에 예술 음악(클래식 음악)의 경우도 소련 동구권 등, 공산권 작곡가와 연주가의 음악은 냉전이나 탈냉전에 따라 공연과 음반의 수입 제작판매를 금지하거나 해금되었다. 이는 음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1981.6.27 문화공보부령 72호) 제5조와 공연윤리규정의 제2장 유의사항 중 적성국의 작품이나 적성국민의 표현물은 금지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문옥배 2008, 40). 이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 관계없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 냉전의 산물로 쇼스타코비치, 하차투리안 등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 작곡가의 작품과 연주자 및 모스크바 필, 체코 필 등 악단의 음반과 공연이 규제되었으나, 1983년 4월 19일 문화공보부가 공산권 국가 순수음악 음반허용 기준을 마련하면서부터 악단의 음반과 공연이 규제 규정이 풀렸다(문옥배 2008, 40). 이후 1988년 6월 21일 문화공보부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음반과 공연이 규제 해금과 국제 교류를 위해 취한 조치로 동구권 등 한국과 비수교국의 예술작품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미해금된 곡들은 1994년 탈냉전 등 소련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물결에 따라 국내에서도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783곡이 추가 해금되었다(양삼석 2010, 224).

IV. 대중음악 금지곡의 기준과 그 사례

금지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표현이 바뀌지만, 크게 공안(公安)의 측면과 풍속(風俗)의 측면으로 나뉜다. 즉 정치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공안 표현과 퇴폐나 음란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풍속 표현을 금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표절도 중요한 사전심의 기준이었고, 방송심의에서는 마약 복용 등, 가수의 도덕성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모든 검열이 그러하듯, 이 역시 노래 발표 혹은 금지가 가져온 사회적 여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각 시기와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유신시기와 긴급조치시기 집권욕과 폭압성으로 권력자에 옹호하지 않거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금지곡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는 6월항쟁의 민주화 여파로 박정희 정권의 대중음악 규제일변도 시대와 달리 1987년 중반에는 규제완화로 국민적 환심을 얻는 조치였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관계없이 어떤 의미인지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상태였다.

1. 박정희 정권

1960년대 초에는 월북 창작자의 작품이 대거 금지의 대상이 되었고, 한일수교 반대에 대한 지식인들의 여론이 높았던 1965년에는 트로트의 왜색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1960년대부터 음반의 강제적 사전심의로 노래가 통제되는 것은 두 경우로 나뉜다. 아예 제작 당시에 사전심의 통과하지 못해 음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래, 그리고 음반 발표 사후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재심을 통해 금지처분을 받은 노래가 그것이다. 전자는 대중매체에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중가요라 볼 수 없으며 일반 수용자는 그 노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로 후자처럼 금지곡이란, 사후심의에서 금지처분이 내려진 곡을

지칭한다.

1960년대 이후 군부정권하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방송윤리 위원회를 장악하여 그 영향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방송금지곡의 탄생은 1962년 6월 방송윤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큰 가요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음악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군대식의 기강을 강조하며 대중음악에 대한 방송금지곡을 지정하였다(국가기록원 “금기와 자율.” 대중가요, <https://parksungwoong.tistory.com/21147>, 2019/08/23: 검색일). 이 시기에 방송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음악방송 심의조항은 ①국가의 존엄과 금지 손상할 우려, ②건전한 국민정서의 함양과 명량한 사회 분위기 조성 저해, ③가사 또는 곡의 표절 등의 대중음악을 금지곡으로 규정·심의하였다(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kindOfTaboo04.do, 2019/03/20: 검색일).

그러므로 대중음악 금지곡 처분이란 대중들의 희노애락 노래에 대한 검열적 통제이지만, 대중음악의 창작과 무관하게 대중들의 민심을 뒤엎으며 방송 차원이거나 개별 심의로 문화 권력자들에 의해 제지되는 과정이다. 방송금지곡의 지정은 전체 방송 차원의 금지곡과 각 방송사의 개별 심의에 규정된 금지곡으로 다시 나뉘는 만큼 대중음악을 휩쓸하기 일쑤였다. 1960년대 이후 방송이 대중가요 인기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방송금지 조치는 음반 심의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했다. 창작자·제작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사후심사로 발생하는 금지곡 처분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전심의에서의 탄압으로 음반발매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었다(encykorea.aks.ac.kr/Contents/CategoryNavi?category=field&keywor, 2019/01/12: 검색일).

조명암 작사의 1939년 곡 <기로의 황혼>과 <코스모스 탄식>은 ‘치안 방해’ 또는 ‘풍속괴란(壞亂)’이라는 이유로 1965년 3월 1일 방송금지곡 제1, 2호로 동시에 지정되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3/20: 검색일). 특히 방송윤리위원회의 첫 번째 금지곡은 조명암이 작사한 <기로의 황혼>인데, 그 지정 사유는 ‘작사가 월북’이었다(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kindOfTaboo04.do, 2019/03/24: 검색일).

그러나 조명암 작사의 1939년 곡 <코스모스 탄식>은 심의통과를 위해 작사가를 여러 명으로 바꾸면서 조명암이 아닌 불로초, 추미림, 박남포 등 원작사가의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 월북 작사자의 노래는 1965년 방송윤리위원회에서 79곡, 1975년 예술윤리위원회에서 77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9/23: 검색일). 특히 1928년 곡 <그리운 강남>은 김형원 작사, 안기영 작곡이었으나, 월북 작사가 박영호의 곡으로 잘못 알려져 금지곡이 된 경우이다.

1965년 이후 광고 음악의 규제로 지정된 방송금지곡 중에는 5곡의 광고음악이 포함되어 있었다. <천양포도주> 광고 음악은 ‘왜색’, 미풍산업의 <백번>과 <까스명수> 광고 음악은 ‘일본곡 표절’로 금지곡이 되면서 광고에 제약을 받았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11/20: 검색일). 트위스트김 <폭발 1초전>(정민섭 작곡) 곡은 1967년 11월 27일 방송윤리위원회 금지와 1968년 2월 예술윤리위원회 금지되었는데, 이 곡은 제목 불량으로 금지된 곡이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8/12/21: 검색일), 이처럼 가사·곡·창법 저속 등 곡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악보가 반려되거나 금지곡으로 지정된 경우, 아예 가사가 없는 경음악으로 심의를 받기도 했다(cafe.daum.net/YouGotShow/VV Fd/25-sbs유영재의 가요쇼를 사랑하는 사람...2019/11/27: 검색일).

1968년 1월부터 7월까지 38곡의 금지곡이 지정되었는데, 금지곡 중 비율이 가장 높았던 ‘왜색’과 ‘표절’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일본가요 표절이 17곡, 왜색풍이 11곡으로 총 28곡이 일본노래와 관련되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2/23: 검색일). 당시 트로트는 일본의 ‘엔카’와 음악적 분위기가 유사했지만 노래 곡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 없이 ‘왜색’이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되는 일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이미자의 1964년 곡 <동백아가씨>이다(cafe.daum.net/YouGotShow/VV Fd/25, 2018/10/20: 검색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1964년 발매 후 1965년 방송윤리위원회 금지와 1968년 공연 및 음반제작으로 예술윤리위원회 금지곡처럼, 금지의 배경에 1965년 일본과의 외교 문제 및 왜색 척결을 내세웠던 사회 분위기상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다(cafe.daum.net/YouGotShow/VVfD/25, 2018/09/12: 검색일).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 또한 1968년 12월 5일 방송윤리위원회 금지와 1969년 7월 19일 예술윤리위원회 금지곡인데, 실제 <섬마을 선생님>은 1966년 KBS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으로 사용되었고 1967년 음반으로 발매되기 전이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8/12/16: 검색일). 일본곡 <타와라보시겐바(俵星玄蕃)>는 1964년 4월에 발매되었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 이 요구되는데, <섬마을 선생님>은 오히려 일본곡 <타와라보시겐바(俵星玄蕃)>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금지곡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섬마을 선생님>은 일본노래보다 먼저 작곡된 사실이 인정되면서 1989년 9월에 해금되었는데, 실제 연주에서 <섬마을 선생님>이 원곡보다 두 배 이상 느리고 앞의 두 마디 이외 유사한 부분이 없어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4/23: 검색일). 반면, <섬마을 선생님>은 1972년 12월 <박춘석 작곡집>, 1974년 <이미자 골든히트 1집> 등에 수록되었고, <동백아가씨>는 1972년 지구레코드 <백영호 작곡집>에도 수록되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4/28: 검색일). 1976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예술윤리위원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신중현은 청와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지만 거절한다(injournal.net/serial_read.html?uid=63512&tion=section10, 2019/06/20: 검색일). 그 후 '만들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까지 받았으나 재차 거절하고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지만,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있다는 의지로 신중현의 1972년 곡 <아름다운 강산> 역시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이고, 원작자인 신중현이 민족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만든 곡이었다(maggun.com/article/read.php?mode=read&idx=1392&page=1, 2019/09/03: 검색일). <아름다운 강산> 가사는 원작자가 회심의 역작으로 시대적 아픔과 시련이 서린 노래로 만든 곡이지만, 이 노래 또한 금지곡이 되었다.

신중현 작사·작곡 1971년 신중현 곡 <미인>, 김추자의 1970년 곡 <거짓말이야> 등의 금지 사유 대부분은 ‘가사퇴폐 및 저속’, ‘창법 저속’ 등 애매모호한 것들이었다(blog.naver.com/yessoopark/221560947416, 2019/08/24: 검색일). 월북 작사자 이외 가장 많은 금지곡을 지정받은 이가 신중현으로 22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예술윤리위원회 18곡, 방송윤리위원회 22곡). 방송금지곡 22곡 중 장미리의 1975년 곡 <두 남편>, 김명희·성영옥·이다연의 1974년 곡 <세상에 만약 여자가 없다면>, 김추자의 1969년 곡 <어떻게 해> 등 3곡은 해금되지 못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4/23: 검색일).

1971년 발매된 음반 《김민기》에 수록된 김민기의 1971년 곡 <꽃피우는 아이>를 서울대학교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가르쳤다는 이유로 압수조치당하였다(namu.wiki/w/김민기, 2019/04/23: 검색일). 한편 1978년 테이프를 발매한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음반이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6/20: 검색일). 김민기는 과거 심의통과를 위해 월북 작사자들의 작품에 예명을 사용했듯이 양희은의 음반에 수록된 양희은의 1979년 곡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양희은의 1978년 곡 <늙은 군인의 노래>, 양희은의 1979년 곡 <고무줄놀이> 등의 노래에 ‘김아영’이라는 작곡자로 등록한 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cafe.daum.net/saed154/migu/1, 2019/04/25: 검색일).

유신시기 박정희 정권은 1975년 「공연 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의 목적은 “국민생활과 밀착하고 있는 모든 공연 활동을 과감하게 정화하여 건전한 국민 생활과 사회 기풍을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공연 활동의 내용으로는 ①국가의 안전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 ②국력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사치·낭비적인 풍조 조성, 소비성 유행 자극, 배금주의·이기주의 고취, 자포자기적인 향락심(向樂心) 선동 배제), ③사회질서, ④사회기강과 윤리(퇴폐적 언동, 음악 작동, 의상 등, 장발 연예인의 공연행위, 흥행 이득만을 목적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저속 취향에 영합하는 것 등 배제)’을 명시하였다(국

가기록원, “금기와 자율.” 대중가요, (<https://parksungwoong.tistory.com/21147>, 2019/08/23: 검색일). 그러나 이들에 반하거나 해칠 수 있는 공연물은 대중가요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곡을 재심의하여 금지곡 지정 및 음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요컨대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공연되고 있는 국내외 대중가요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작업에 착수하였다. 시정 기준은 ①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②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③패배·자학·비관적인 내용, ④선정·퇴폐적인 것 등이었다(blog.daum.net/kkss1/13614932, 2019/03/20: 검색일). 이 기준에 의거하여 박정희 정권은 다음의 곡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방송국 등 각계에 통보하였다. 즉 1975년 6월 19일에 김추자의 1971년 곡 <거짓말이야> 등 43곡과 월북작가의 흘러간 노래 87곡, 7월 9일에 이장희의 1973년 곡 <그건 너> 등 44곡, 9월 29일에 김부자의 1970년 곡 <버림받은 여자> 등 48곡이 그것이다(parksungwoong.tistory.com/21147, 2019/09/12: 검색일). 외국가요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 15일에 <Revolution> 등 135곡, 12월 22일에 <Lay lady lay> 등 126곡, 모두 261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였다(cafe.daum.net/winbird/NSSj/1036, 2019/05/30: 검색일). 이런 금지곡 선정은 군부정권의 대중과의 친화력이 전혀 없었던 증표였다. 이금희의 1966년 곡 <키다리 미스터 김>은 '단신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금지곡이, 배호의 1970년 곡 <0시의 이별>은 통금이 있던 시절 '0시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양희은의 1971년 곡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강조하면 사회에 허무감과 우울함이 조장된다'는 이유로, 김추자의 1971년 곡 <거짓말이야>는 중독성 있는 창법 저속과 '거짓'의 불신감 조장이라는 항목으로 금지곡이, 이장희의 1973년 곡 <그건 너>는 이유 없이 무조건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금지곡이, 조영남의 1973년 곡 <불 꺼진 창>은 '그냥 유리창에 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한대수의 1974년 곡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노래 제목을 이유로, 한대수의 1974년 곡 <행복의 나라로>는 '지금은 불행한 나라

냐'는 이유로, 정미조의 1975년 곡 <불꽃>은 공산주의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송창식의 1975년 곡 <왜 불러>는 '남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ballad.egloos.com/5829669, 2019/10/15: 검색일).

방송금지곡의 금지 사유로는 작가(작곡자 및 작사자) 월북, 왜색, 표절, 불신감 조장, 창법저속, 불건전, 가사저속, 퇴폐, 품위 없음, 허무, 치졸, 비탄, 애상, 방송부적합 등이 적용되었다. 박신자의 1959년 곡 <댄서의 순정>, 이미자의 1964년 곡 <동백아가씨>는 왜색, 봉봉·상록수의 1969년 곡 <사랑의 스카이웨이>는 기타(간접선전), 이정민의 1970년 곡 <사랑이 외로워 울었네>는 비탄, 김추자의 1971년 곡 <거짓말이야>는 저속, 양희은의 1971년 곡 <아침이슬>, 4월과 5월의 1972년 곡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퇴폐, 이장희의 1973년 곡 <그건 너>는 저속, 조영남의 1973년 곡 <새야 울지마라>는 품위 없음, 쿨 SISTERS의 1974년 곡 <맥시 아가씨>는 불건전, 송창식의 1975년 곡 <고래사냥>은 방송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kimkwmy.blog.me/220825896877, 2019/12/20: 검색일).

1975년 공연활동의 정화운동으로 민간기관인 연예협회에서 자발적으로 금지곡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연예협회의 금지곡 지정은 예술윤리위원회에서 222곡을 금지곡을 선정한 이후 별도로 진행되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9/23: 검색일). 연예협회는 송창식의 1975년 곡 <왜불러> 등 4곡에 대해서만 금지곡을 요청하여 예술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위원회가 금지곡으로 지정하도록 만들었다(cafe.daum.net/YouGotShow/VVFd/25, 2018/12/23: 검색일). 한편 연예협회가 1978년 이수만이 김민기의 1970년 곡 <아침이슬>을 공연무대에서 부르는 것에 징계를 검토하기도 하였는데(blog.daum.net/whrbgus39/5515, 2019/11/23: 검색일), 이것은 1977~1978년 사이 김민기의 작품을 가명으로 출시해야 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었던 연예협회가 정부 정책에 동참하려 했던 노력으로 판단된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11/20: 검색일).

금지 사유가 애매했던 노래로는 조미미의 1975년 곡 <댄서의 순정>, 이미자의 1969년 곡 <기러기 아빠>, 이장희의 1973년 곡 <그건 너>, 1974

년 곡 <한잔의 추억>, 이승연의 1973년 곡 <일요일 손님들> 등이 있다 (blog.naver.com/much_korea/221007173496, 2019/10/11: 검색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반협회가 이들 음반이 수록된 음반에 대해 수거통지를 냈음에도 오히려 판매 수요가 늘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가수요 현상이 일어남은 물론 판매와 유통의 금지가 음악수용자들에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cafe.daum.net/YouGotShow/VVFd/25, 2019/09/27: 검색일).

2.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은 표절이나 작사자 월북, 왜색, 현실 부적절, 비참한 생활 묘사, 퇴폐 등이 박정희 정권의 대중음악 금지와 마찬가지로 대중음악을 금지시켜 철퇴를 강요하였다. 예컨대, 김수철의 1984년 곡 <나도 야 간다>(1985.1.28.) 가사 표절로 방송금지; 이선희의 1985년 곡 <갈바람> (1986.3.31.); 김연자 <사랑의 미로>(1983년); 조용필 <타인>(1987.8.3.); 현철 작곡 <앞으나 서나 당신 생각>(1982년) 등은 선율 표절 사유로 방송 금지가 되었고, 박영호 작사 <막간아가씨>는 1980년 4월 21일 공연윤리위원회 금지곡이 되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10/24: 검색일). 그 외, 막간아가씨, 박영호, 이재호, 작사자 월북(1980.4.21.); 사랑의 오두막집, 길목, 정진성, <사랑> 표절(1980.5.6.); 이정표, 월견초, 나화랑, 왜색(1980.3.27.); 장타령(거지타령) 민요, 현실부적절(1980.7.28.); 화류춘몽, 추미림, 이봉룡, 비참한 생활 묘사, 퇴폐(1980.7.28.) 등 곡목·작사·작곡지정일 사유 등으로 금지된 곡들도 있었다(cafe.daum.net/YouGotShow/V(VFf/25, 2019/08/23: 검색일).

그러나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추세에 맞춰 대중음악 금지곡 검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정 투쟁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1990년대 이후 정태춘을 비롯한 민중가요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1996년에 음반 사전심의회가 철폐되었다(seulsong.tistory.com/376, 2019/12/03: 검색일). 따라서 이후에는 음반 금지곡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음반에 대해서

는 연령에 따른 등급심의만 남아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자체 심의가 있어 방송금지곡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이다.

한국 대중가요 금지곡 중 노래 가사가 아닌 내레이션 내용 때문에 사상 첫 케이스로 금지되었다. 1987년 공연과 방송금지 모두 해제된 노래 중 1974년 상영됐던 영화 「별들의 고향」에서 윤시내의 1974년 곡 <나는 열아홉 살이예요>가 있는데(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 2019/02/30: 검색일), 이 노래는 노래 중간에 나오는 남녀 배우의 대사가 이야기 형식의 가사 내레이션(narration) 내용으로 저속과 퇴폐의 사유로 금지되었다.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심의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1983년 수백 곡의 금지곡을 지정했는데, 금지곡의 강화는 사전검열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이전의 내역과 중복되었고 새롭게 지정된 금지곡은 5곡에 불과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10/21: 검색일). 특히 방송금지곡 중 1987년에 해금되지 못한 29곡은 주로 표절과 관련되었는데, 그 예로 김수철, 이선희, 조용필의 노래가 대부분이며, 다만 조용필의 1987년 곡 <타인>은 개작만 해금되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9/23: 검색일).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중 바니걸스가 불렀던 박영호 작사의 1978년 곡 <막간 아가씨>가 포함되었는데, 이 노래는 1975년 이후 ‘작사자 월북’의 사유로 금지된 유일한 노래이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4/28: 검색일). 한때 정광태가 불렀던 1982년 곡 <독도는 우리 땅>이 1984년 일정 기간 방송편성에서 제외되면서 금지곡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독도는 우리 땅> 곡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지곡으로 지정을 한 적은 없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5/18: 검색일).

그러나 1987년 8월 17일 공연윤리위원회가 금지곡 382곡 중 186곡을 해제하였는데, 해금된 노래들의 금지 사유는 ‘표현 저속’, 불신감 조장, ‘치졸’, ‘창법 저속’, ‘왜색’이 가장 많았다(gkstdkf.blog.me/221119422773, 2019/11/03: 검색일). ‘표절’로 금지된 노래들이 59곡 중 9곡만

해제되었는데, 금지 기준이 애매했던 다른 사유들에 비해 표절은 대상 원곡과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비율이 낮았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7/12: 검색일). 아울러 연예협회의 요청으로 금지되었던 김민기의 1971년 곡 <아침이슬>, 송창식의 1975년 곡 <왜볼러> 등 4곡도 금지 해제되었다(kimkwmy.blog.me/220825896877, 2018/12/11: 검색일).

1987년 9월 5일 방송심의위원회가 국내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했던 노래들을 해제하였는데, 당시 음악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방송금지가요심의회'에서는 1965년 3월 이후 방송 금지된 832곡 중 월북 작사자의 작품 95곡을 제외한 499곡을 해제하였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07/23: 검색일). 공연윤리위원회의 경우 퇴폐·저속을 사유로 금지한 노래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방송심의위에서는 왜색을 사유로 금지한 곡들이 주를 이루었다(blog.daum.net/whrbgus39/5515, 2019/10/02: 검색일). 또한 금지곡의 해제 비율에 있어서 왜색이 262곡 중 251곡으로 해제 비율이 높았던 반면, 표절곡은 151곡 중 17곡으로 10% 정도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루었다(cafe.daum.net/YouGotShow/VV Fd/25, 2019/05/21: 검색일).

V. 결론: 의의와 평가

한국정치사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은 정치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집권하고 권력을 강화했다는 점, 군부의 영구집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든 점, 행정국가적 현상의 초래와 정당과 국회의 무력화, 정치자금과 관계된 부정, 정치보복의 악영향 등, 집권욕과 폭압성을 남겼다(한석태 1988, 125). 대중음악의 금지곡은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적 통제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표 사후에 금지로 묶인 금지곡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예 발표 과정에서 삭제나 수정을 종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해온 검열성 사전심의 제도에 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

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피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비위상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잦은 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오히려 군부의 특성상 ‘일북’, ‘왜색’ 등 공안 쪽에 비중을 뒀다 마땅함에도 풍속(風俗)의 측면에서 ‘제목 불량’, ‘치졸’, ‘표현 저속’, ‘창법 저속’, ‘표절’, ‘가사 저속’, ‘퇴폐’, ‘허무’, ‘불건전’, ‘비탄’, ‘애상’, ‘불신감 조장’, ‘방송 부적합’, ‘품위 없음’ 등 판정은 대중음악 탄압의 도구였다. 이러한 금지곡 규제의 발단은 이미 5·16 박정희 정권이나 5·17 전두환 정권이 주창하던 쿠데타 공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 일소 및 사회악 일소 운운하며 내세운 국가규율의 확립과 다름 아니다. 그들이 집권욕에 의한 체제유지를 위해서 대중음악을 부패와 사회악으로 본 자체가 대중들에게 정신적·심리적 폭력성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군부정권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을 규제와 금지를 통해서 재단(裁斷)한 것은 국민을 하찮게 본 데 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것들이었다.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그동안의 ‘치졸’, ‘품위 없음’, ‘방송 부적합’, ‘제목 불량’, ‘불건전’, ‘표현 저속’, ‘불신감 조장’, ‘창법 저속’, ‘표절’, ‘퇴폐적’ 등 운운하며 강제하던 대중음악을 해제한 것은 그들이 폭력으로 집권한 세력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금지의 기준은 다르지만, 공안(公安)의 측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이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총과 칼로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이야말로 저질스럽고, 불신스럽고, 인격과 품위가 없는 집단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결국 군부정권은 오로지 집권욕을 내세워 장기집권을 해 왔듯이 그들의 권력 붕괴는 인간적 가치 상실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에서 보여줬듯이 민중들을 지각없는 일부 학생과 폭도들에 의한 불순분자로 폄하하면서 독재자로 연명했다. 그러나 민중들의 질적 규정에 의한 부마항쟁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강경론을 펼치며 자신이 발포명령을 내려 수백 명도 응징하겠다고 대노했지만, 그는 결국 측근에게 살해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유신헌법에 이은 5공화국 헌법으로 국민의 직선이 아닌 거수기들인 '통대'나 '선거인단'의 간선으로 집권욕을 강화해 오다가 후계정치 일환으로 노태우란 신군부세력이자 육사 동기를 점지하여 집권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으나 국민적 항쟁에 굴복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경우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거세된다는 점에서, 대중음악을 금지곡으로 만든 세력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대중에게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통렬히 각성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강문구. 1994. “한국 현대정치와 군부의 위상.” 강문구 외, 『한국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 서울: 한울.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 『국보위백서』, pp. 40-44.
- 권정구. 2018. “대중음악 금지곡 중 왜색과 표절의 관계 고찰: 비공개 심의원본자료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39), pp. 61-94.
- 권정구. 2016. “한국 대중음악 규제와 저항의 역학, 그리고 그 반전.” 『음악과 문화』 (34), pp. 77~104.
- 권정구. 2015. “1987년 저작권법 개정과 국제저작권협회 가입이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 『사회와 역사』, pp.217-245
- 권정구. 2019. “비공개 심의본에 나타난왜색금지곡의 특징 분석.” 『한국민요학』 55, p.25~52.
- 김은경. 2010.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음악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 정치학박사 논문.
- 김은경. 2011.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2), pp.67~96
- 김이진. 2007. “한국대중음악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선정성기준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 11-15.
- 문옥배. 2006. “일제강점기 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音·樂·學』 (13), pp. 381-428.
- 문옥배. 2008.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음악논단』 22(22), pp. 25-64.
- 양삼석. 2010. “음악의 정치윤리적 독해: 한국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중가요 통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3), pp. 221-248.
- 양삼석. 2012. “한국 군사정권하의 금지곡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 1970~80년대의 대중음악 통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1), pp. 233-257.
- 이영미. 2015. “대마초사건, 그 1975년의 의미” 『역사비평』 (112), pp. 206-231.

- 이영미. 2011. “기억과 증언 : 내가 체험한 1980, 90년대 음반 검열과 음반법.” 『기억과 전망』 (25).
- 정주신. 2011. 『한국의 정당정치: 군부·체제·집권당』. 대전: 프리마북스.
- 정주신. 2019a. “영국 록그룹 퀸(Queen) 4인 멤버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 일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3(1), pp. 107-150.
- 정주신. 2019b. “영국 비틀즈 그룹의 탄생과 소멸, 그 음악세계.” 『한국과 세계』 1(2), pp. 63-96.
- “정화 바람에 날아갈 ‘퇴폐 공연물’.”(「동아일보」, 1975/06/07).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1.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 상권, p. 916.
- 한석태. 1988. “5·16군사쿠데타.”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신동아 1월호 별책 부록), p. 125.

투고일 : 2020년 1월 8일 . 심사일 : 2020년 1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5일
--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를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10월 부미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한국의 정당정치: 군부·체제·집권당』,『탈북자 문제의 인식 1, 2, 3』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Review of Korean Pop Music Bans : Focusing on the Park Chung Hee regime and the Chun Doo Hwan regime

Chung, Joo-Sh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article examined how the military regime, led by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Chun Doo-hwan regime, influenced popular music by the regime's desire and oppression. In particular, the term "Choice" and "Exclusion" were used as part of the military's repressive rule and as a strateg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military's perspective, using the terms "Choice" and "Exclus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military's authoritarian regimes, contrary to the trend of existing research. The review of banning pop music under the military regime here is an example of a fusion study in which the military regime systemizes banned songs and oppresses the public with freedom of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shown concurrency as a role of seeking to maintain the military's regime and tyrannize it. First, the banned songs under the military regime were mostly performed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which ruled out the creativity and legitimacy of those who made and sang songs, as they were performed by the ruling party's desire for power or violence. Second, the lifting of the banned song under the military regime was made only after the military regime surrendered to the national uprising, in that the song was made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June 1987 uprising. After all,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banned songs in terms of wind speed rather than in terms of public security was a sign that the military regime was severely oppressed by the public, socially and culturally.

Keywords : Military regime, popular music, ban, oppression, Park Chung-Hee regime, Chun Doo-Hwan regime